대한소아신장학회 연구비 지급규정

2018년 7월 1일 제정

제 1 조 (목적) 본 학술상은 대한소아신장학회에서 소아신장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특히 협력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자, 공모 하여 선정된 최우수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비로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 본 학술상의 명칭은 **대한소아신장학회 연구비**라고 칭하여 시상한다.
제 3 조 (수혜대상) 대한소아신장학회 정회원인 소아과 전문의가 본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.

제 4 조 (연구비의 재원) 본 학술연구비는 대한소아신장학회의 연구 증진을 위하여 학회 혹은 연구비 지원 회사에서 지원하며, 금액의 변동이나 지급의 지속성에 관한 사항은 학회와 연구비 지원 회사 간에 각각 사전 협의한다.

제 5 조 (지급대상 과제 수 및 기간) 1년에 1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과제 당 연간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. 상황에 따라 연 2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. 제 6 조 (공고 및 연구비 수상자 선정) 대한소아신장학회 홈페이지에 연구비 과제 응모를 공고하고, 응모 기간 내에 접수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연구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, 심사점수 최고득점 과제를 선정하고,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학술 연구비 수상자를 결정한다.

제 7 조 (연구계획서의 제출) 연구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하는 날까지 대한소아신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) 신청서 1부(소정양식) [원본 1부]
- 2) 이력서 1부(소정양식) [원본 1부]
- 3) 주요 연구업적 목록(저서 및 논문) 1부 [원본 1부]
- 4) 연구 계획서(소요 연구비 명세서 포함) 8부 [원본 1부 및 대학명, 연구자명 및 연구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연구계획서에서 삭제한 사본 7부]

제 8 조 (연구비 심사위원회) 연구과제의 심사는 대한소아신장학회 연구비 심사위원회에 일임하여 결정한다. 심사위원회는 본 학회의 이사장, 총무이사, 학술이사, 협연이사 및 그 외 심사 위원 2명(학술이사가 위촉)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. 학술이사가 위촉하는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술이사의 임기에 따른다.

제 9 조 (연구비 지급 방법) 지급이 결정된 과제명과 연구자명은 대한소아신장학회 홈페이지에 공고 하고, 과제에 대한 연구비 시상은 대한소아신장 춘계 혹은 추계학술대회 석상에서 시행한다.

제 10 조 (연구비 수혜자의 의무) 연구비 수혜자는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에 대한 소아신장학회 춘계 혹은 추계학술대회에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하고, 연구 종료 후 연구비 사용 내역을 증빙 서류와 함께 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. 상기 의무 사항 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는 대한소아신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 11 조 (기금관리)

1항 : 본 학술상의 기금관리는 총무이사가 담당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.

2항 : 본 학술상의 기금관리 감사는 본 학회의 감사가 담당한다.

3항 : 사정에 의해 시상의 축소로 생긴 예산은 다시 기금에 포함된다.

제 12 조 (부칙)

1항 :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효한다.

2항 : 본 규정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.

3항 : 연구비 수혜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혜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 할 수 있다.

4항 :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행에 따르며, 이사회에서 심사내 규를 정하여 시행 한다.

5항 : 본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6항 :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